

#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9-959
----------	-------

제출년월일 : 2025. 12. 4.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1. 제안이유

- 현재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과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분산되어 있는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회부 절차 등을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일원화하여 통일성 있게 규정하고
- 「지방자치법」 제66조 위임사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명시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윤리심사 및 징계’의 심사 요구·회부 절차 등을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일원화하여 통일성 있게 규정함 (안 제96조 ~ 제100조)
- 윤리심사 결과 보고와 징계 의결을 명확히 구분함 (안 제101조)
  - 윤리심사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후 본회의에 보고함
  -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함
- 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2조 ~ 제103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현행규칙 : 붙임 3

6. 예산수반 사항 :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 법령 : 붙임 5

## 【붙임1】 개정규칙안

###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의 제목 “징계” 를 “윤리심사 및 징계” 로 한다.

제96조의 제목 “(징계의 요구와 회부)” 를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속위원 중에서” 를 “소속 위원 중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에 의하여” 를 “이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징계대상자에 대한” 을 “윤리심사 또는” 으로, “징계사유를” 을 “그 사유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를 “다만,” 으로, “징계를” 을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로,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 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징계요구” 를 “의원으로부터 제3항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 요구”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장은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 라 한다) 또는 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 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의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되, 폐회 중에는 다음 회기의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시한) 제9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원의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대상 의원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9조를 삭제하고, 제98조를 제99조로 하며,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시한) 제96조에 따른 의장의 안건 회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제9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윤리심사대상자·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9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96조제4항의 경우: 윤리심사 또는 징계 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제99조(중전의 제98조) 중 “징계” 를 “윤리심사 및 징계” 로, “아니 한다” 를 “않는다” 로 한다.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심문과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장에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윤리심사 보고 및 징계 의결 등)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윤리심사와 징계 의결의 결과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제10장(제102조 및 제10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10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 “이라 한다)은 7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 “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⑦ 자문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3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대리한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에서 다룬 안전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장 <u>징계</u>	제9장 <u>윤리심사 및 징계</u>
<p>제9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u>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의원(이하 “징계 대상자” 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u></p> <p>② 위원장은 <u>소속위원 중에서</u> 징계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u>제1항에 의하여</u>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p> <p>③ 의원이 <u>징계대상자에 대한</u>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u>징계사유를</u>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다만, 법 제95조에</u></p>	<p>제96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u>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u>」를 위반한 의원(이하 “<u>윤리심사대상자</u>” 라 한다) 또는 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의원(이하 “<u>징계대상자</u>” 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p> <p>② -----<u>소속 위원 중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u> ----- -----, <u>이를</u>----- -----,</p> <p>③ ----- <u>윤리심사 또는</u> ----- ----- ----- <u>그 사유를</u> ----- -----, -----, <u>다만,</u> -----</p>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신 설>

<신 설>

제9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6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

④ 의원으로부터 제3항의 윤리 심사 또는 징계 요구-----.

⑤ 의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 항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되, 폐회 중에는 다음 회기의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제97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시한) 제9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원의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대상 의원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기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 설>

제98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8조(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시한)

제96조에 따른 의장의 안건 회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제9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윤리심사대상자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9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96조제4항의 경우: 윤리심사 또는 징계 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제99조(의사의 비공개) 윤리심사 및 징계----- 않는다.

제99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 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신 설>

<삭 제>

제100조(심문과 변명) ① 윤리특별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윤리심사 보고 및 징계

의결 등)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윤리심사와 징계 의결의 결과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제10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10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7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⑦ 자문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03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대리한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